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2014년 4월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을 발표함. 일본의 정성평가 강화는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정량적 위험관리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이번 지침에는 전사적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이로 인해 일본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정성적 정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정성평가 수단 역시 내부통제에서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ORSA로 강화될 것임을 뜻함. 유럽과 미국 역시 정성평가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정성평가 규제 강화는 일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2014년 4월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을 발표함.

- 감독지침에는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 앞서 일본은 2012년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 산정기준을 개정¹⁾한 바 있음.
- 2012년 지급여력비율 개정이 정량적 측면의 위험관리 강화였던 반면 금번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은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일본의 정성평가 강화는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정량적 위험관리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1) 2012년 일본 금융청은 가용자본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요구자본 산출 신뢰수준을 90%에서 99%로 상향하는 등 지급여력비율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아마토생명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파산한 사례가 있음.
- 이를 계기로 정량적 위험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급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사례

(단위: %)

구분	파산시기	지급여력비율	
		FY1999	FY2000
동방생명	1999. 6. 4	154.3	8.5
제백생명	2000. 5. 31	304.6	-380.2
대정생명	2000. 8. 28	384.7	67.7
제일화재	2000. 5. 1	330.0	-298.4

자료: 일본 금융청.

- 이에 정량적 위험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관리 통제 및 내부절차와 같은 비계량적·정성적 사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념들이 강조되기 시작함.
 - 첫째, 내부위험(operational risk)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내부위험관리를 위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이 강조됨.
 - 둘째,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함.²⁾
- 내부통제는 보험회사의 모든 통제의 총합으로 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임.
 - 내부통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업의 외부위험(business risk)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내부위험관리가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임.
 - 취약한 내부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규모가 크고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패 시 금융회사의 평판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 또한 외부위험에 비해 위험요인(risk factor)의 식별과 관리가 보다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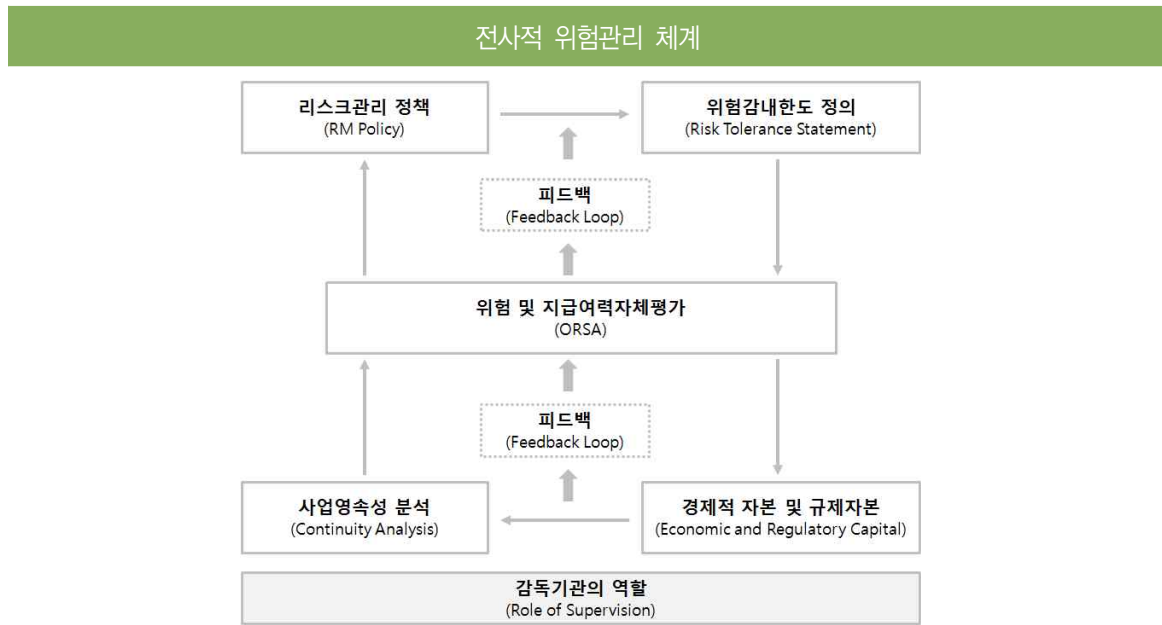
2) 2010년대 들어 대형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위험관리가 도입됨.

- 내부통제 강화로 위험관리 규정의 실행책임과 회계정보의 생성 및 보고에 관한 내부책임자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었음.³⁾
- 전사적 위험관리는 보험회사의 위험한도 설정, 규제적·경제적 자본관리, 위험감시 및 위험관리방법이 규정된 관리 체계임.
 - 전사적 관점이란 영업활동과 리스크관리를 분리하여 인식하던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개념임.
 - 부서별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위험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사적 위험관리가 강조되기 시작함.
 -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에서 보험회사는 노출된 모든 위험에 대해 위험관리전략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ORSA를 통해 얻어진 정성적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ORSA는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의 보유위험과 위험관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내부적 위험평가체계임.
 - ORSA는 보험회사가 표준방법⁴⁾에 의해 산출된 규제자본과 자신들의 위험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자본을 스스로 평가한 뒤 평가결과와 자신들의 재무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기위한 내부평가체계임.
 - 지급여력비율이 계량적 위험정보만을 포함하는 반면 ORSA는 계량적·비계량적 위험정보를 모두 포함

3) 내부통제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SOX(sarbanes-oxley act)법이 있음.

4) 표준모형 감독당국이 승인한 내부모형

〈그림 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표준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



자료: Insurance Core Principles, IAIS.

■ 일본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회사법(2006년), 금융상품거래법(2008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음.

- 회사법은 내부통제의 정비 및 운영을 이사회의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은 내부통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 내부통제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공시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보고체계에 관한 평가보고서로 내부통제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
- 금융상품거래법은 회사법에 비해 내부통제에 관한 요건이 보다 구체적이며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
 - 회사법이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감사보고서만을 둔 것에 비해 금융상품거래법은 회사법에 비해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규정과 벌칙조항을 포함

〈표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및 회사법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

구분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대상기업	대기업, 위원회설치회사	상장기업과 자회사
목적	업무의 적절성 확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대상자	이사회	경영자
공시	사업보고서	내부통제보고서
감사	감사·감사위원회	외부감사(감사법인·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감사보고서	내부통제감사보고서
벌칙	없음	내부통제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내부통제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자료: 이흥무(2014), 『환경의 변화와 보험회사의 ERM 규제』.

■ 새롭게 공표된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는 재무건전성 목적의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음.

- 전사적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ORSA에 대한 내용이 보험회사 위험관리 지침에 새롭게 포함됨.
 - 정성적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로서 위험의 식별 및 계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이 강조됨.

■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와 이를 위한 정성적 위험관리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정량적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되던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제도에 정성적 정보가 반영될 것임.
 - 이로 인해 향후 정성적 평가 결과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뜻함.
- 둘째, 재무건전성 정성평가의 수단이 내부통제에서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ORSA로 이행하고 있음.
- 셋째, 정성적 평가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이 향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험핵심원칙(ICP)은 ORSA를 각국 보험감독당국에 권고
- 유럽 Solvency II 역시 ORSA 실시와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
-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SMI(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일환으로 ORSA를 공표

■ 현재 국내 보험감독당국 역시 ORSA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정성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⁵⁾에 따르면 ORSA는 2015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17년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ORSA 시행에 대비해⁶⁾ 국내 보험회사들도 정확한 내부위험평가를 위한 통제구조 정비, 위험 평가 및 보고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kiri**

5) 금융감독원(2014. 7. 31).

6) 구체적인 ORSA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논의 단계임.